

울산지방법원

제 5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0나6635 물품대금
원고, 피항소인	김OO (66*****-2*****)
	울산 **구 **동 **
	송달장소 울산 **구 **동 **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
	보령시 **동 **
	송달장소 대전 **구 **동 **
	대표이사 조**
제 1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10. 11. 2. 선
변 론 종 결	2011. 5. 12.
판 결 선 고	2011. 6. 2.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194,3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09. 9. 12.경부터 같은 해 12. 3.경까지 피고가 소외 **산업의 운영자인 소OO으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한 공장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건자재 및 철물 등 합계 7,194,330원(부가세 포함) 상당의 물품을 납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7,194,33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0.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공사 도급인인 소OO과 공사현장소장인 소외 김OO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고 원고가 이를 승낙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에게 위 물품대금채무를 면제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그러므로, 원고가 위 채무인수계약을 승낙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을 제2호증(채무인수계약서),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김OO의 증언이 있고, 위 채무인수계약서(을 제2호증) 본문에는 "인수인 병(소OO, 김OO을 지칭한다)은 채권자 갑(원고를 포함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들을 지칭한다)이 채무자 을(피고를 지칭한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 사건 공사 관련 채권에 관하여 채무자 을이 채무를 인수·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채권자 갑은 이를 승낙하고(제1조), 채권자 갑은 채무자 을에 대하여 채무 전부를 면제한다(제3조)"고 기재되어 있고, 마지막 채권자 란은 "별지와 같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첨부된 별지(법인사업자와 일반사업자로 구분되어 있고, 원고는 일반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별지'라 한다)의 채권자표시 란에 원고의 상호 및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각 자필로 기재되어 그 옆에 원고의 인감이 날인이 되어 있다.

2) 그러나 위 을 제2호증(채무인수계약서)은 비록 그 별지에 원고의 서명, 날인이 있기는 하나, 위 채무인수계약서의 작성 형태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위 채무인수계약을 승낙하였음을 뒷받침 할 증거가 되기 부족하고,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김OO의 증언은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려우며, 그 외 을 제4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채무인수계약서 중 원고의 자필서명과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이 사건 별지 우측 상단에는 '채무인수계약서와 간인필수'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에 따라 채권자 중 법인사업자들로부터는 채무인수계약서 본문에 간인을 받았음에도 일반사업자인 원고에 대하여는 위 채무인수계약서 본문에 간인이 받지 않아 원고가 이 사건 별지에 서명, 날인할 당시 위와 같은 면책적 채무인수계약서의 존재 및 그 기재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② 원고가 이 사건 별지에 자필서명과 인감을 날인한 시점은 2010. 3. 24.인데, 원고는 2010. 3. 9. 피고를 상대로 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을 하였다가 피고의 이의신청으로 위 서명·날인 후인 2010. 4. 27. 추가 비용을 납부하면서 이 사건 소송을 계속 유지하여 오고 있고, 채무인수인으로 기재된 소OO이나 김OO에게 그 물품대금의 이행을 최고하거나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별지에 서명, 날인할 당시 위 채무인수계약서의 존재 및 그 기재 내용을 알면서 이를 승낙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별지에 서명, 날인할 당시 위 채무인수계약서를 전혀 보지 못하였고, 단지 소OO이 운영하는 **산업의 직원 김OO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하러 왔을 때 이를 확인하는 취지에서 서명, 날인한 것일 뿐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채무자의 변경을 초래하는 것이어서 그에 대한 채권자의 승낙이 있었는지 여부는 보다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면책적 채무인수를 승낙하였음에도 추가 비용을 부담하면서 이 사건 소송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험칙과도 배치되어 원고의 위 주장을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별지에 서명, 날인할 당시 위 채무인수계약서의 존재 및 그 기재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위 별지에 서명, 날인하였다고 볼 개연성이 높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의호

판사 김성식

판사 연선주